

『외화공동구매정기예금』특약

제1조 (적용범위)

『외화공동구매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조 (예금의 종류)

이 예금의 계정과목은 외화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자격)

이 예금의 가입자격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입은 개인만 가능합니다.

제4조 (모집기간)

이 예금의 모집기간은 매 모집회차별로 은행이 정하는 한시적인 판매기간을 의미합니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매 모집회차별로 은행이 정합니다.

제6조 (예치통화)

이 예금의 예치통화는 미국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영국파운드화, 스위스프랑화, 캐나다달러화, 호주달러화, 뉴질랜드달러화, 홍콩달러화, 싱가포르달러화, 덴마크크로네화, 노르웨이크로네화, 스웨덴크로나화, 쿠웨이트디나르화 및 중국위안화로 총 15개 통화입니다.

제7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8조 (적용이율)

- ① 이 예금의 이율은 가입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외화정기예금이율의 가입기간 해당 이율을 적용합니다.
- ② 이 예금은 모집회차별로 판매금액에 따른 차등 우대이율을 제시하고, 모집종료 후에 최종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우대이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제9조 (분할인출)

- ① 예금주는 모집기간 종료 후 만기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이 예금을 분할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② 분할인출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는 가입일부터 인출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외화정기예금이율의 예치기간 해당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제10조 (중도해지)

제9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금주가 만기일 이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이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중도해지하는 예금의 이자는 가입일부터 중도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제11조(만기후 이자)

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예치원금의 최종잔액에 대해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가입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후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제12조 (갱신)

- ① 이 예금은 예금주가 만기일 이전에 가입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만기일(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에 전과 동일한 기간 또는 예금주가 별도로 정한 기간으로 자동갱신 처리합니다.
- ② 갱신된 예금의 이자는 갱신된 날을 가입일로 하여 제8조 제1항 및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적용이율을 정합니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6조를 적용(준용)합니다.

2017.8.18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7-약관-0123호